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김남영, 최용이·김광석 사무관(5565, 5562)
덤핑조사팀장 방순자, 박종희·최병달 사무관(4960, 4961)

무역위, 염화콜린 및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재심사 개시 결정

① 무역위원회(위원장 : 현정택)의 "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종료재심사 개시 결정" 의견에 대하여, 기획재정부는 9.26일, 재심사개시 결정을 관보에 게재함.

② 아울러, "일본,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종료재심사 개시 결정"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함.

1 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종료재심사 건

□ 무역위는 '12.8.31일, 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*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하였음.

* 염화콜린 : 가축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B4로서 닭, 돼지 등의 가축 사료에 분말 또는 액상 형태로 공급되는 사료첨가제 또는 동물용 의약품 원료

○ 재심사요청인*은 현재 부과 중**인 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함.

* 요청인 : ㈜코파벤스페셜, ㈜코린화학
**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10.1.29.~'13.1.28.(3년) / 10.28%~27.55%

○ 무역위는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, 요청인인 ㈜코파벤스페셜, ㈜코린화학이 "요청자격"이 있고, "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"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.

□ 무역위는 위 내용을 '12.8.31일,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였으며, 기획재정부장관이 '12.9.26일, 재심사 개시결정을 관보에 게재함

○ 이에 따라,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및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.

2 일본,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종료재심사 건

□ 무역위는 '12.9.20일, 일본,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*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하였음.

* 스테인리스스틸바 :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(中空)이 없는 원형강(round bar)·각강(square bar)·육각강(hexagonal bar)·평강(flat bar)인 제품

○ 재심사요청인*은 현재 부과 중**인 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함.

* 요청인 : (주)세아특수강, 동일제강(주), 동부특수강(주), 동방금속공업(주)
**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10.2.24.~'13.2.23.(3년) / 3.33%~15.39%

○ 무역위는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, 요청인인 ㈜세아특수강 등 4개사가 "요청자격"이 있고, "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"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.

□ 무역위는 위 내용을 '12.9.20일,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였으며, 기재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,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및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.

<참고> 1. 염화콜린 종료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참고자료 1부.
2. 스테인리스스틸바 종료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참고자료 1부.
3.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 1부.

참고1 염화콜린 종료재심사(2차) 개시의견 결정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㈜코파벤스페셜, ㈜코린화학

○ 재심사 대상국 : 미국, 인도, 중국 및 캐나다

○ 재심사요청물품

– 품명 : 염화콜린(Choline Chloride)

– 용도 : 비타민 B4로 항지방간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음. 세포막 조직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가축의 성장 촉진 및 산란율을 증가시키는 사료 필수 첨가제

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배합사료업체 및 농·축협 배합사료공장 등

○ 수입자 : (주)세인인터내셔날, (주)이앤티, (주)다원케미칼 등

□ 덤핑방지조치 현황

○ 원심(5년) 및 1차 재심(3년) 등 2차례 덤핑방지관세 부과

* 원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04.10.20.~'09.10.19.(5년) / 10.28%~27.55%

* 1차 재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10.1.29.~'13.1.28.(3년) / 10.28%~27.55%

□ 국내시장 규모('11년 기준) : 13,716톤 / 168억원

참고2 스테인리스스틸바 종료재심사(2차) 개시의견 결정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㈜세아특수강, ㈜동일제강, 동부특수강(주), 동방금속공업(주)

○ 재심사 대상국 : 일본, 인도 및 스페인

○ 재심사요청물품

– 품명 : 스테인리스스틸바(Stainless Steel Bar)

– 정의 :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(中空)이 없는 원형강(round bar)·각강(square bar)·육각강(hexagonal bar)·평강(flat bar)인 제품

– 용도 : 정밀산업, 자동차부품, 화학기계, 건설자재, 기타의 산업설비 등

□ 덤핑방지조치 현황

○ 원심(5년) 및 1차 재심(3년) 등 2차례 덤핑방지관세 부과

* 원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04.7.30.~'09.7.29.(5년) / 5.11%~15.39%

* 1차 재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10.2.24.~'13.2.23.(3년) / 3.33%~15.39%

□ 국내시장 규모('11년 기준) : 3,303억원

○ 국내생산품 : 1,011억원(30.6%)

○ 조사대상물품 : 677억원(20.5%)

○ 기타국 : 1,615억원(48.9%)

참고3 반덤핑조사(재심사) 절차도

